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

제 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57호(2016.4.21.)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고시 제2016-51호, 2016.3.31.)를 붙임과 같이 개정·발령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.

가. 개정사항

-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" 중 신설 263품목(별지 1)
 - * (주요내용) 소발디정, 하보니정(C형 간염 치료제) 등
-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" 중 변경 100품목(별지 2~3)
-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" 중 삭제 12품목(별지 4)
 - * (주요내용) 자진취하, 양도양수, 코드변경 등으로 급여목록 삭제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213호 별지 3으로 삭제되는 약제 중 일부의 상한금액 변경 3품목(별지 5)
 - * (주요내용) 목록정비로 인해 삭제된 품목에 대한 금번 고시 별지 3 변경사항 반영

나. 시행일

- 별지 1, 별지 2, 별지 4, 별지 5 :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
- 별지 3 : 2017년 4월 30일부터 시행
- 붙임 1 :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(2016년 6월 12일부터 2017년 5월 1일)

붙임 : 개정고시 전문 및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문

※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메뉴상단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. 끝.

대한병원협회



수신처

전국 병원장

사원 김재현 팀장 정윤학 국장 류항수

시 행 : 보험 제 2016-197 (2016.04.21)

우 121-737 서울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5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kjh@kha.or.kr